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31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나3119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152982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노형삼

변론 종결2024. 10. 25.

판결 선고2024. 11. 29.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가단15298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B1) 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20. 9. 14.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4,272,116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272,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9. 14.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B에 대한 2건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L 유한회사는 위 채권에 관하여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46061호로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1. "피고는 원고에게 28,177,226원과 그 중 8,983,163원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부제기로 2012. 10. 13. 확정되었다.

2) L 유한회사는 2019. 2. 22. 원고에게 위 채권의 2018. 9. 30. 기준 잔액채권(원금 8,983,16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31,741,788원) 및 법적절차비용(218,130원)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3) 2021. 8. 10.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총 45,861,010원(= 원금 8,983,163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36,877,847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6.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B, O, P, Q, R, 망 S(2017. 6. 20. 사망)의 상속인인 T이 있었다. 위 상속인들은 2020. 9. 1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항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20. 9.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의 재산상태

B는 2018. 12. 1.부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시인 2020. 9. 14.까지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해 위 양수금 채무(원금 8,983,163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Y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듯 사해행위로 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이었던 B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각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을 모시기 위해 피고가 토지매입비용과

건물공사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이지만 피고의 경제 상황으로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피고 고유의 재산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귀속시키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사람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한 경우2) 에,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므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909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참조).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8. 9. 30.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수일로부터 2일 전인 2008. 9. 28. 피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6,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망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5.경부터 망인 사망 이후인 2020. 10. 14.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가 금원을 이체하여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경우는 1995. 7.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1995. 7. 22. 접수 제84180호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시기는 피고가 망인을 모실 부동산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5.경과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매수할 당시 실제로 그 매수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이 망인이 아닌 피고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금 채무자인 B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인 1/7 지분을 유효하게 승계함으로써 위 지분은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되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인 B가 유일한 재산인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행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하여 보건대, 피고는 B와 수십 년간 따로 독립생활을 하여 그 채권채무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경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역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2)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 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08. 12. 16. 접수 제117605호로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M, 근저당권자 N조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울산지방법원 2013. 12. 27. 접수 제16238호로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추가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20. 10. 16. 모두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와 가까운 2022. 9. 22.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109,908,110원(84,544,700원×130%3))이라고 할 것이고, 사해행위 당시(2020. 9. 14.)와 가까운 2020. 9. 21.경 기준 위 각 부동산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3,29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부동산 가액(109,908,110원)에서 위 채무액(10,003,296원)을 공제한 99,904,814원 중 B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4,272,116원(99,904,814원×1/7)이 위 부동산 중 B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43,520,000원 (167㎡ × 260,600원)	갑 제6호증의 1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75,900,000원	갑 제9호증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505,800원 (6㎡ × 84,300원)	갑 제6호증의 2
별지 목록 기재 제4항 부동산	8,138,900원 (49㎡ × 166,100원)	갑 제6호증의 3
합계	84,544,700원4) 제2항 부동산 가격에 제1항 토지 가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항 토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43,520,000원 (167㎡ × 260,600원)	갑 제6호증의 1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75,900,000원+505,800원+8,138,900원)	

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위 책임재산(14,272,116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45,861,010원) 중 더 적은 금액인 14,272,1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14,272,1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후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욱

판사박소연

판사김수연

별지

1) 제1심 공동피고 B는 자백간주로 전부 패소하였고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었음에도 추완항소하지

아니하여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이다.

2)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중은행 등의 경우 주택의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개별공시지가의 140 내지 150%를 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개별공시지가의 130%를 시가로 산정하여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계산을 반영하였다.

4) 제2항 부동산 가격에 제1항 토지 가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1항 토지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함